

연구부정 의심행위 처리절차 안내서



연구부정 의심행위 신고서식

(제보자용)

2

▶ 신고자 정보

이름(*)		소속/직급(*)	
이메일(*)		전화번호(*)	

※ 익명제보라 하더라도, 제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이메일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▶ 피신고자 정보

이름(*)		소속/직급(*)	
이메일		전화번호	

▶ 의혹 연구물

◆ 연구물 명(논문제목 등)*	
◆ 저자	
◆ 연구물 분류(*)	① 논문 ② 연구계획서 ③ 연구결과보고서 ④ 출판물 ⑤ 특허 등 지식재산권 ⑥ 기타()
◆ 발간단체(저널명, 특허청 등)	
◆ 한국연구재단 과제번호	
◆ 기타	

※ 다수인 경우, 동일 양식의 표를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

※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여부는 의혹 연구물의 사사표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재단 지원과제가 아닌 연구물의 신고가 접수되면 재단은 해당 연구기관으로 신고내용의 이관 조치만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▶ 신고내용

◆ 연구부정행위 유형(*)	① 위조 ② 변조 ③ 표절 ④ 부당한 저자표시 ⑤ 부당한 중복게재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⑦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(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,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행위)
◆ 비교 대상 연구물 ※ 연구부정행위 유형이 ③, ⑤인 경우 기재	
◆ 인지 배경(*)	
◆ 상세 내용(*) ※ 해당 행위가 연구부정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	
◆ 증거자료(*)	첨부

(*) 필수입력 항목입니다.

연구부정 의심행위 제보요건 연구재단 검토 기준

▶ 제보 요건검토 기준

1	제보된 연구부정 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?	
2	제보된 증거가 의혹을 뒷받침할 만큼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가?	※ 제보된 내용과 증거물이 좌측 ①,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안을 요청하고, 충분히 보완된 경우에 한해 정식 제보로 접수
3	제보된 의혹이 교육부 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(제12조)」 또는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(제31조제1항제1호)」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가?	※ 제보된 의혹이 좌측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식 제보로 접수하고,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
4	제보된 의혹은 연구재단 지원 과제와 관련된 사항인가?	※ 제보된 의혹이 좌측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연구가 수행된 기관에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, 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연구가 수행된 기관에 제보 내용을 이첩



▶ 제보 요건검토 진행

※ 세부항목(질의형)에 대한 답변이 '예'가 나올 수 있도록 요건 검토 진행

대분류	세부항목	비고
1. 신고내용	1-1. 피신고인의 소속, 이름 및 직급을 포함하고 있습니까?	
	1-2.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을 포함하고 있습니까?	
	1-3. 연구부정행위 의혹 연구물을 포함하고 있습니까?	
2. 의혹내용	2-1. 제기하는 연구부정행위 의혹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까?	
	2-2.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?	
	2-3. 해당 내용이 연구부정행위라고 생각한 이유를 포함하고 있습니까?	
	2-4.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까?	
	2-5.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있습니까?	

연구부정 의심행위 조사·검증 권고사항 (연구기관용)

- 본 권고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하여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조사·검증이 관계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적 하자 없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본 권고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부정 사건 조사·검증에 한하여만 적용 바랍니다.
- 본 권고사항은 연구재단의 주무부처 외 다른 중앙부처 및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소관하는 연구부정 사건 조사·검증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기관 자체 연구과제나 학위논문에서 발생한 연구부정사건 등의 조사·검증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습니다.
- 본 권고사항의 세부항목을 예외 없이 준수하여 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조사내용의 합리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.
- 관계 법령·규정은 지면관계상 아래와 같이 약어로 표현하였습니다.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(혁법)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(혁령)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(혁칙)
 - 학술진흥법(학법)
 - 학술진흥법 시행령(학령)
 -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(지침)



대분류	세부항목	관련 법령·규정	비고
1. 제보자 권리보호	[제보자 신변의 보호] 조사와 무관한 제보자의 신원노출, 신분상 불이익, 위협·협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(혁령)제56조 (지침)제14조	
	[제보자의 알권리 보장] (제보자 연락처가 확보된 경우) 제보자에게 조사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(지침)제14조 (지침)제17조	
2. 피조사자 권리보호	[피조사자 명예의 보호] 조사·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(지침)제15조	
	[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] 피조사자에게 조사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하고 소명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(지침)제17조	

대분류	세부항목	관련 법령·규정	비고
3. 예비조사	<p>[예비조사의 한계 준수]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, 피조사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만 본조사 없이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 입증은 예비조사가 아닌 본조사 절차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.</p>	(지침)제19조, 제20조	
4. 본조사	<p>[본조사위원회의 구성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본조사위원회 인원수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● 본조사위원회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을 30%이상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● 본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를 50%이상으로, 그리고 이 중 최소 1인은 외부인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	(지침)제21조	
	<p>[본조사위원회의 공정성] 본조사위원회는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절차 등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 없이 공정하게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(지침)제22조	
5. 판정	<p>[판정의 효력 확보]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등을 거쳐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(지침)제24조	
	<p>[판정 지연에 대한 조치]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종료되기 어려운 경우, 그 사유를 관련자에게 통지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(지침)제24조	
6. 이의신청	<p>[이의신청 기한 보장]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*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판정 결과 통보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0일간</p>	(지침)제25조	
7. 결과제출	<p>[결과 제출기한 준수]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*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도 함께 송부</p>	(혁법)제31조 (혁령)제57조	

| 일러두기 |

- 한국연구재단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부정 의혹 사건 처리(신고접수 및 조사·검증 등)를 위해 제보자, 연구윤리 실무자 등이 참고하시도록 본 안내서를 배포합니다.
- 본 안내서의 내용은 관계 법령·규정 제·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고,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대로 수정·배포 예정입니다.
-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rf.re.kr/report/study?menu_no=339)이나 연구윤리정보포털(<https://www.cre.re.kr>)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